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5호 (사건번호 : 2020조총0047)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내용 및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위법 수집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익신고('19.12.26, '20.5.15., '20.7.16.)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신고내용	사실 관계		
①정보주체 동의없이	• 배정업무 담당)에서 소관 홈		
개인정보 수집)를 통해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2019. 전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음	7월 이	
②개인정보 수집시	• 이메일시스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 이용 목적', '동의	거부에	
고지사항 누락	따른 불이익의 내용'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음		
	• 피심인은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보관기간을 5	5년으로	
③보유기간 경과	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미파기	• '14.8.31.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한	
	'20.4.30.이 되어서야 파기함		
④개인정보처리업무	• '16.6.15.~'19.5.29.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출입통	
위탁사항 비공개	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사실을 누락하였음		

나.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의은 생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계좌번호, 연락처)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이 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한 행위

피심인은 메일 시스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이용 목적',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4.8.31.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5년) 경과 이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파기하지 않다가 '20.4.30. 파기한 사실이 있다.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 목적으로 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6.6월~'19.5월에 해당 사항을 피심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8.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9.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피심인이 통합로그인 시스템 및 메일 시스템 회원 가입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14.8.31.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20.4.30.이 되어서야 파기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출입 관리시스템 구축·관리를 목적으로 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6.6월~'19.5월 해당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V.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75조제2항제1호·제4호, 제75조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제26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2023-008-077호(사건번호 2020조총 0004)의 같은 조항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본 의안에서 처분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4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만원)
ਜਿਹਲ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원 알리지 않은 경우	l 면 세75수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3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Я		2,400		

나. 과태료의 가중·감경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2019. 10. 7.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조사 태도 및 시정 노력,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기준(▲내용·정도 중요, ▲은폐·조작 위반, ▲검사 거부·미시정, ▲피해자 10만명 이상, ▲ 2차 피해 발생, ▲위반 기간 3개월 이상, ▲기타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중·소기업, ▲내용·정도 경미, ▲장애·심신미약자, ▲부주의 또는 피해없음, ▲검사 전 시정·해소, ▲의견제출 기간 시정·해소,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 전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2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기준('19.10.7.)>

유 형	내 용	기 준
대상 규모	중·소기업	감경(50%)
내용·정도	경미사항 3/10 미만 위반*	감경(50%)
네 6 . 0 포	중요사항 7/10 미만 위반*	가중(50%)
위반자 유형	장애 / 심신미약자 등	감경(50%)
	부주의 등 + 피해없음	감경(50%)
	검사 전 시정 / 해소	감경(50%)
태도·노력	의견제출 기간 시정 / 해소	감경(25%)
	은폐·조작 위반	가중(50%)
	검사 거부 / 미시정	가중(50%)
	피해자 10만명 이상	가중(50%)
결과	2차 피해 발생	가중(50%)
	3개월 이상	가중(50%)
기타 파이시	기타 필요시	감경
기타 필요시	기타 필요시	가중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75조제1항제1호	1,000		500	500
제15조제2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75조제2항제1호	600		300	300
제21조제1항(개인정보 파기)	제75조제2항제4호	600		300	300
제26조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	제75조제4항제5호	200		100	100
계		2,400		1,200	1,200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은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제정) 제2조(공표요건)는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3호),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게이저나 나중비 이바 해저되다 겨지 고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길		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500만 원		
		법 제15조 ^{기 년} 제2항		2023. 5. 10.	300만 원	
		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 파기 위반	2023. 3. 10.	300만 원	
	법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사항 미공개		100만 원		
2023년 5월 1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75조제2항제1호·제4호, 제75조 제4항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